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907호)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9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시체 해부 참관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심의 규정 신설 (박해철의 원안, 김예지의원안)	3

I. 개요

1.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9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해철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6. 25.
- (3) 회 부 일 : 2024.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2.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체 해부 참관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심의 규정 신설 (박해철의원안, 김예지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거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등).

현행	박해철의원안	김예지의원안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생략)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9조의10(시체 해부의 참관) ①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10(시체 해부의 참관) ①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시체 해	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신청을 받은 의과대학

	<u>부를 실시하는 의과대</u> <u>학의 장은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을 우선적으</u> <u>로 허가하여야 한다.</u> 1. 「의료법」에 따른 <u>의료인 및 간호조무</u> <u>사</u> 2. 「약사법」에 따른 <u>약사 및 한약사</u> 3. 「의료기사 등에 관 <u>한 법률」에 따른</u> <u>의료기사</u> 4. 「응급의료에 관한 <u>법률」에 따른 응급</u> <u>구조사</u> ③ 제1항에 따른 참관 <u>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u>한다.</u>	<u>의 장은 기관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참관 여</u> <u>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9조(벌칙)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제2항을 위반 <u>하여 시체 해부를 영</u> <u>리적으로 이용한 자</u>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u>절차·방법과 참관 인</u> <u>원·기준·방법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보건복</u> <u>지부령으로 정한다.</u>

3의2. ~ 3의7. (생략)	3의3. ~ 3의8. (현행 제3호의2부터 제3호 의7까지와 같음)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 ----- ----- ----- -----.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 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 제9조제1항을----- ----- -----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한 민간업체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카데바)을 이용하여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¹⁾.

□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은 없어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의학 교육과 연구 발전에 쓰일 것이란 기대에 시신 기증을 결정한

1) “우리도 근육 실물 봐야”...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에 해부학 강의 논란, 조선일보(2024.6.17.), <https://v.daum.net/v/20240617004139805>

기증자와 그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해부 강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이에 두 개정안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 박해철의원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되, 해당 의과대학의 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 김예지의원안은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이 시체 해부를 실

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의과대학의 장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²⁾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이라는 숭고한 뜻에 따라 시신을 기증한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기증시신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해부 참관에 대한 허가 또는 심의를 규정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와 시체 해부 참관에 대한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규정한 박해철의원안의 경우, ① 모든 목적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의과대학의 장이 해부 참관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의 보장에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체 해부 참관이 현행법 제9조³⁾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한정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3. ~ 7. (생략)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 해부 참관 여부 결정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김예지의원안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체해부심의회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시체 해부 참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 하에 해부 참관이 가능하도록 함에 동의함. 다만, 의과대학의 장이 설치하는 시체해부심의회에 허가 등 관리 역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해부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시체해부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참관 교육은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 및 제16조에 따른 시체표본 활용도 가능하므로 두 경우 모두 시체해부심의회 심의 의무화 필요. 다만, 의과대학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학위과정

간 의대생 해부 실습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치 필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최근 있었던 참관 사례 등으로 기증 시체의 해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지만, 시체 해부에 대한 ‘참관’ 여부는 신청 절차의 법제화보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김예지의원안에서는 시체의 일부 이용은 인체유래물에 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했으나, 참관 여부는 현행 법에서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명시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시체 해부에 참관 절차 강화 및 관련 처벌 규정 명시를 통해 현행법 내 공백을 메우겠다는 등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공감함.

- 그러나 의과대학장은 시체 해부 등과 관련하여 법적 의미의 허가권을 갖거나, 이와 관계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과대학장의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 현실적으로는 시체 해부와 관련하여 ‘영리적 목적의 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모든 종류의 ‘영리적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대한해부학회)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의과대학장이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체해부심의회’가 시체 해부 참관 목적 및 필요성을 심의하여 허가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현행법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한법의학회) 시체 해부의 단순 참관은 실제로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적의 해부에 대해서 법률로 참관 자격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09